

中國文學研究會 會則

- 第一條 中國文學研究會(以下 本會)라 稱한다.
- 第二條 本會는 成均館大學校(以下 本校) 中語中文學科(以下 本科)에 둔다.
- 第三條 本會는 中國文學 및 周邊學問에 對한 研究를 目的으로 한다.
- 第四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한다.
正會員은 本校의 本科卒業 및 同大學院 修了以上者로 하고, 準會員은
- ① 本大學院 在學中인 者
 - ② 其他 中國學研究에 從事하는 者 및 本會의 越旨에 贊同하는 者로 한다.
但, 準會員은 會長 被選舉權이 없다.
- 第五條 本會의 入會는 正會員 二人以上의 추천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거쳐 決定한다.
- 第六條 本會는 第三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아래와 같은 研究活動을 한다.
- ① 研究發表會 開催
 - ② 學報 및 其他 出版物 發行
 - ③ 國內外 他學術機關과의 交流
 - ④ 其他
- 第七條 本會는 아래와 같은 任員을 둔다.
會長 1人, 副會長 1人, 評議員 4~10人, 幹事 若干人
- 第八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會長을 代理한다.
- 第九條 評議員會는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或은 其他 重要한 會務를 協議한다.
- 第十條 幹事는 會長의 命에 依하여 會務를 處理한다.

본회의 회칙은 본회 회칙에 顯著한 貢獻을 한 人士를
總會의 同意를 얻어 會長이 推戴한다.

第十一條 本會는 監事 二人을 둔다.

監事는 每年 1回 會務監査를 行한다.

第十三條 本會는 第六條 二項의 業務處理를 爲해 編輯委員會를 둔다.

編輯委員은 必要時에 任員會에서 選出한다.

第十四條 本會의 會長·副會長 및 監事는 定期總會에서 選出한다.

評議員은 會長의 提請으로 總會의 同意를 얻는다.

幹事는 會長이 任命한다.

第十四條 定期總會는 每年 1回 夏期放學中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任員

會 或은 會員 十人以上의 要請에 의해 會長이 召集한다.

第十五條 本會의 會議는 ~~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고 議案은 出席

委員의 過半數로 表決한다. ~~會員 過半數~~

第十六條 會長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連任할 수 있다.

第十七條 總會는 아래의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① 會則通過

② 任員選舉

③ 豫算決算審議

④ 其他 本會의 重要事項

第十八條 本會의 經費는 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第十九條 會員은 會費納付와 研究發表의 義務를 진다.

第二十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8月 1일부터 翌年 7月末까지로 한다.

第二十二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第二十三條 이 會則에 明示되지 아니한 事項은 貫例에 따른다.

1981年 7月 20日 創立總會通過

1982年 1月 15日 第1次修正